

2004년 육계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

농림부

1. 가축계열화 사업(공공)

1)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표 1〉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991~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안)
돼지	사업량	17	(1)	(4)	5(4)	6(5)
	금 액	68,018	653	8,554	28,443	23,653
닭·오리	사업량	14	-	(1)	2(1)	2(2)
	금 액	67,674	-	1,920	3,567	15,500

※ ()내는 기선정 업체수임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닭, 오리
- 자금지원대상자 :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나. 자금지원방법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단, 재신청시 대상지이외 사업계획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
 -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 방법
 - 지원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축산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서 소요되는 종축입식 또는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 수수료
 - 작성내용 :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 두수, 월간 및 연간 생산·입식·출하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연간 종축입식비, 기타운영사항
 - 지원조건 : [별표 1] 참조
- 다.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지원조건	비고
1. 생산기반시설	•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 종돈장 시설 •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 시설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5%(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4%)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2.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주체직영 비육돈·육계·오리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3. 계열농가생산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4%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
4. 가공시설 (육가공공장 등)	• 「축산물 도축·가공시설설치 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5%(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4%)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5. 유통·판매시설	•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사업 내용과 동일		
6.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 등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5.5%, 2년이내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의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위생·식물위생의 확보와 규격화·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검사·연구·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농축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축산물 수출전문농가·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경쟁력 제고
- 우수농축산물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물류비 차등 지원
- 국제규범의 준수 및 수출업체·농가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확대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 수출진흥)

<표 2>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축종	사업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보조	용자		
닭·오리	22,143	-	15,500	-	6,643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공공)

1) 목적

- 김치·채소·인삼·과실·화훼·축산물에 대하여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4) 연도별 지원현황

〈표 3〉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예산(안)
합계	25,955	26,605	25,421	28,882
김치	1,774	2,045	1,931	2,045
채소	8,593	6,556	3,558	6,556
인삼	727	1,040	1,683	1,039
과실	7,736	12,248	7,165	14,525
화훼	6,962	4,578	10,964	4,579
축산물	163	138	120	138

3. 축산물유통개선사업(공공)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지원

1) 목적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등급별 축산물 확대로 유통체계 구축
- 유제품가공시설 설치로 우유 수급안정 및 낙농산업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폐합 추진
- 고품질 및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육가공 업체 시설자금 지원
- 닭고기 수출전용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 확대로 닭고기 수출확대
- 유제품·시유시설 지원으로 낙농 기반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표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까지	2003	2004(예산안)	2005이후
·사업량	-	30	25	-
·사업비	-	34,326	51,106	-
-축박자금 융자	-	24,028	35,774	-
-지방비	-	-	-	-
-자부담	-	10,298	15,332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1) 사업대상자 : 2003년 말 현재 운영 중인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휴업 또는 영업정지 업체 제외)

- 인접 시·도(시·군)의 기존도축장 2개소이상 통·폐합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용도 : 소·돼지·닭 도축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및 기존 영업장 인수 소요자금 등(부지매입비 및 가공장 설치자금은 지원 제외)

(3) 지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2~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 단, 인수자금은 시설자금 지원액의 20% 범위내
※ 사업완료후 HACCP을 적용하여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 회수).

〔도축장 시설보완〕

(1) 사업대상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를 지정받거나 시·도지사로부터 HACCP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도축장 중 기존 도축장의 위생·환경시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사업자

(2) 지원용도 : HACCP시설 보완, 오폐수처리시설(혈분제조시설 등) 지원

(3) 지원조건

-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1) 사업대상자 : 기존 오리도축장의 시설보완(이전을 통한 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등)

(2) 지원용도 : 오리 도축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부지매입비 제외)

(3) 지원조건

-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용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닭고기 부분육시설〕

(1) 사업대상자 : 육계 계열화업체중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우선순위〉

- ① 순위 : 가공품 생산에 HACCP를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하고자 시설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 ② 순위 : 브랜드 닭고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단체(품질인증업체, 브랜드 상표등록을 우선함)
- ③ 순위 : 전년도 닭고기 수출실적이 연간 10만불 이상인 업체 등
- ④ 순위 : 기타 정부지원업체 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2) 지원한도액 : 2,500백만원(용자 70%, 자담 30%)

(3) 지원조건 :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내용

- 닭고기 부분육 가공을 위한 시설설치자금(절단, 발골, 포장, 보관 등의 시설)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② 축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지원

1) 목적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육가공장, 도축장·가공장 등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LPC 및 오리도축·가공장의 안정적인 원료육 확보를 위한 계약농가 확보 등으로 운영활성화 도모
-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 계란등급제를 도입하여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등급란 수집 및 판매자금 지원
- 양돈농가에서 출하되는 규격돈을 육가공업체에서 일정물량을 흡수하여 돼지가격안정 유도를 위해 원료구매자금 지원
-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의 브랜드 사업부문 지원 대상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유통브랜드경영체에 원료육 구매자금 지원
- 시설이 우수하고 위생관리가 양호한 HACCP 적용 도축장에 인센티브 운영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표6〉 참조)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및 오리도축·가공장 운영활성화자금〕

(1) 지원조건

- LPC : 연리 4%, 1년거치 일시상환
- 오리도축·가공장 : 연리 5.5%, 1년 거치 일시상환

(2) 지원대상

-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설·운영중인 LPC 및 오리 도축·가공장

〈표 5〉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용자		
			계	보조	용자			
계	25	51,106	35,774	-	35,774	-	15,332	
도축시설 ¹⁾	7	10,500	7,350	-	7,350	-	3,150	
축산물가공시설 ²⁾	17	25,500	17,850	-	17,850	-	7,650	
사육전문가공시설 ³⁾	1	15,106	10,574	-	10,574	-	4,532	

* 주 1) 도축시설(용자금 7,350백만원) : 도축장시설현대화 2,800백만원, 도축장 시설보완 2,800,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1,750

2) 축산물가공시설(용자금 17,850백만원) : 육가공업체, 닭고기 부분육시설, 계란집하장, 유제품개발생산시설

3) 사육전문가공시설(용자금 10,574백만원)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표 6〉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까지	2003	2004(예산안)	2005이후
· 사업량	-	29	60	-
· 사업비	-	70,463	93,338	-
- 축발기금 용자	-	70,463	93,338	-
- 지방비	-	-	-	-
- 자부담	-	10,298	-	-

- 축산발전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 LPC 육가공시설 활용(임차)업체가 원료구매자금 지원 요청시에는 LPC 업체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

- LPC 및 오리도축·가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으로 사용(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 고금리 차입금 충당, 원료구매자금 등)

※ 원료구매자금 지원기준

- 월 원료구매 소요액(월 구매물량 × 전년도 평균 산지가격의 70%)

〔도축장〕

(1) 사업대상자 : HACCP 적용·운용 중인 소·돼지·닭·오리 도축장 영업자(LPC 및 도매시장·공판장은 지원 제외)

〈우선순위〉

①순위 : 최근 3년간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위반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②순위 : 브랜드업체와 연중계약을 체결하여 도축하는 업체

③순위 : 전년도 도축가동률(일일 평균 도축물량 ÷ 일일 도축능력 × 100)이 50% 이상인 업체

④순위 : 기타 정부지원 업체 등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동 순위일 경우 가동률 등 실적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2) 지원금액 : 개소당 800백만원 이내

(3) 지원용도 : 인건비, 전기료, 일반관리비 및 HACCP 운용 등을 위한 제반 운영자금

(4) 지원조건 : 연리 5%, 1년거치 일시상환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전년도 도축실적 및 전년도 지출입 결산서, 운영계획 등 포함), HACCP 지정서(또는 시·도지사의 HACCP 적용 확인서), 기타 관계서류
나. 2004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표7〉 참조)

③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1) 목적

- 식육소매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정예화하여 소매단계 유통개선 도모
-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확대 및 판로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표 7〉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업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용자		
			계	보조	용자			
계	25	51,106	35,774	-	35,774	-	15,332	
· 축산물종합처리장	7	22,800	22,800	-	22,800	-	-	
· 도매시장·공판장	13	5,032	5,032	-	5,032	-	-	
· 오리도축장	4	1,891	1,891	-	1,891	-	-	
· 도축장	19	15,000	15,000	-	15,000	-	-	
· 육가공업체	300천두	37,590	37,590	-	37,590	-	-	
· 브랜드경영체								

〈표 8〉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1993~2001	2002년	2003년	2004(예산안)
소매유통시설	사업량	2,052	75	85	사업량 : 50 계 : 25,000 용자 : 17,500 자담 : 7,500
	사업비	계	209,326	25,000	
	용자	187,313	17,500	15,000	
	자부담	22,013	7,500	6,429	
브랜드가맹점	사업량	454	125	100	
	사업비	계	99,400	30,000	
	용자	69,580	21,000	18,600	
	자부담	29,820	9,000	8,000	
닭고기체인점	사업량	-	10	20	
	사업비	계	-	9,750	19,500
	용자	-	6,825	13,650	
	자부담	-	2,925	5,850	
합 계(축발기금 용자)		256,893	45,325	47,250	17,500

※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지원

- 식육의 부분육·냉장육 유통활성화, 구분판매제(부위별·등급별 쇠고기 종류별) 및 브랜드화 촉진
- 식육소매유통시설, 브랜드가맹점, 닭고기체인점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표 8〉 참조)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닭고기체인점설치〉

-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 및 계열화업체로서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개소당 사업비 : 기금 융자금 기준 개소당 30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지원내용
 - 판매장 시설비,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
 - 점포구입비(임차료 포함)

나. 지원조건

-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 식육소매유통시설 : 연리 5%, 5.5%(일반), 3년거치 5년상환

다. 사업자 준수사항(식육소매유통 및 브랜드가맹점 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브랜드업체는 자체 육가공장에서 가공한 브랜드육을 등록된 자체상표를 부착하여 가맹점에 냉장육으로 공급하여 판매한다
 - 브랜드 가맹점 및 음식점 겸업 가맹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브랜드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브랜드업체에서는 가맹점의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브랜드가맹점 및 음식점 겸업 가맹점은 브랜드업

체와의 거래증명내역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추천 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5~6)
 - 시·도(시·군) : 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 유통사업단(02-397-7921)
- 사업시행절차
 - 사업희망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추천서(붙임1)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축)협 창구에 자금대출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사(지역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성, 인허가 및 부지확보 가능성, 사업희망자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계약서 등 증거서류 확인 등)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하고, 사업대상자 대출추천현황(붙임2)을 지체없이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각 시·군의 추천결과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시설이 설치되는 시·군의 대출추천서(붙임1)를 발급 받아 사업희망자가 대출을 받고자하는 농(축)협 창구에 자금대출 신청
 - 시·군에서는 수시로 사업신청을 받아 농협에 융자금대출을 추천하되,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자금인출이 가능하고, 회계연도 이내에 대출완료가 가능한 사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내에 일부 금액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농협에서는 시·군에서 발급한 대출추천서를 확인한 후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절차에 의거 기성금액을 대출
 - 대출상당 및 대출심사 후 총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고 당해 대출소요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에 자금배정을 요구(붙임3)하고(농업금융부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에 수시로 용자한도 배정요청), 자금배정을 받아 대출실행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후 대출실행결과(붙임4)를 해당 시·군 및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 유통사업단에 제출
-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수시로 계통조직을 통해 사업비 반납자 현황(붙임2)을 제출
- 기성고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증빙서류 첨부)
- 농림부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175억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자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상황을 파악하여 업소명, 주소, 사업비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음식점점업 별도 표시)
- 사업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계약 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자가시공은 인정하지 않음)

④ 축산물등급판정

1) 목적

-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으로 품질고급화 시현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
- 계란 및 닭고기 등급제 추진
- 등급제 교육 및 홍보 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8조 및 제2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표 9〉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
사업량	1	1	1	1	
계	13,517	10,917	13,492	13,520	
사업비					
보조	13,517	10,917	7,292	7,824	
융자	-	-	-		
지방비	-	-	-		
차부담	-	-	6,200	5,696	

4.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 목적

-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제로 전환
-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구제역·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및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방역단체 운영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및 농장체형기자재 구입비 지원
- 구제역·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의 정례적 운영
 - 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10,355개 단 기준) 운영비 지원
 - 일제소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축협 소독차량(20대)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사안별로 20~100만원 포상금 지급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39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표 10〉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1992-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업량					
계	28,011	20,075	26,052	26,883	30,500
사업비					
보조	24,755	12,071	18,845	19,243	23,000
용자	-	-	-	-	-
지방비	-	6,300	6,300	7,390	7,500
자부담	3,256	1,704	907	250	-

- 지원규모 : 13,000백만원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백세미용알생산업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가축사육업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용자 8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 다. 사업내용
- 축산업등록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지원대상 시설·장비 : 별표 참조
- ※ 축산업등록과 관련없는 시설·장비 구입 등은 지원 제외

5.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 목적

-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축산업등록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등록제 조기 정착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 등록대상 축산업경영자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소요자금 융자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0조(축산업의 등록)

4) 연도별 지원계획

〈표 11〉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사업량	-	-	-	-	-
사업비					
계	-	-	-	-	16,250
용자	-	-	-	-	13,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3,250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 경영자로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 경영자

나. 지원내용

6. 농업종합자금지원 (자율)

1) 목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2조(후계농업인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4) 2004년도 지원계획

(표 12) 2004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2003 사업비			2004 사업비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백만원				백만원		
계	540,000	108,000	432,000	578,900	115,800	463,100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원)

5) 세부사업내용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 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7.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1) 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비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
- 재해 농·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표 13)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안)
총 지원규모	44,700	44,700	44,700	44,700	38,310	37,600	35,000
재특회계예산	4,233	640	990	1,307	2,133	2,702	2,849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젓소: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500두 미만
- 닭: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표 14〉 일반축산 경영자금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5백만원이내	10백만원이내
한(육)우·말	10두미만	10두이상
젖 소	20두미만	20두이상
돼 지	100두미만	100두이상
닭	7,000수미만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4.0%
- 우수농가 우선지원 : 용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구제역 일제소독등 공동방역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볏짚이용, 남은음식물 사료화
- 기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4.0%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나, 2004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표 15〉 2004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자금명	사업비					
	계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5,000억원	35,000	35,000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②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회생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 설치
- 평가결과 대상경영체 유형에 따라 자금 지원

3)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표 16〉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992-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안)	2005년이후
사업량	-	-	50,000	200,000	800,000
	-	-	725	2,928	29,280
사업비	보조	-	-	-	-
	용자	-	-	725	2,928
	지방비	-	-	-	-
	자부담	-	-	-	-

* 2005~2006까지는 2,000억원, 2007~2010까지는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